|  |  |  |
| --- | --- | --- |
|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보세감독관리장소의 보세화물 유통 관리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86호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보세감독관리장소의 통관 일체화 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보세화물 유통 관리의 수속 간소화, 원가 절감화 및 효율성 제고를 전면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보세감독관리구역의 보세화물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이 전개하는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간,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보세물류센터(B형) 간, 보세물류센터(B형) 간의 보세화물 유통(이하 '구역 간 유통'으로 약칭)은 이 공고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2. 구역 간 유통 업무를 취급하는 기업은 '차수별 화물 운송, 집중 신고'의 방식으로 유통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구역 사이에서 유통되는 화물은 기업이 스스로 운송할 수 있으며 보세운송(轉關運輸) 방식으로 처리하는 구역 간 유통 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구역 간 유통 업무를 전개하는 기업은 세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세화물전자대장을 작성하고 규정된 시한 내에 세관의 보세화물유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유통 비안(備案), 화물 발송•수취, 신고 등 정보를 세관에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구역 간 유통 업무를 전개하는 기업은 관할 세관에 <세관 보세화물 구역 간 유통 신고표>(이하 '<신고표>'로 약칭, 첨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유통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1) 반입기업이 <신고표>의 보세화물 반입 정보를 작성하여 반입지 관할 세관에 신고하고 반입지 관할 세관이 심사를 실시한다.  (2) 반입지 관할 세관의 심사를 통과한 후 반출기업이 <신고표>에 관련 반출 정보를 작성하여 반출지 관할 세관에 신고하고 반출지 관할 세관이 심사를 실시한다.  (3) <신고표>는 반출지 관할 세관의 심사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기업은 세관의 심사를 거친 신고표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화물을 발송•수취하고 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5. 구역 간 유통 비안(備案)은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1부의 <신고표>는 반출기업의 전자대장 1부 및 반입기업의 전자대장 1부와 대응되어야 한다.  (2) <신고표>상의 보세유통화물의 명칭, 상품코드 및 계량단위 등은 기업 전자대장의 해당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3) 구역 간 유통 상품의 신고 계량단위 및 신고 물량이 일치하여야 하며 신고한 계량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法定) 물량이 일치하여야 한다.  (4) 유통거래 양 당사자의 상품코드(상품코드 앞 8자리)가 일치하야 한다. 유통거래 양 당사자의 상품코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반입지 관할 세관이 상품분류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하는 상품코드에 따라 유통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5) <신고표>의 반입자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품항목 대조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6) <신고표>는 일반적으로 반년간 유효하며 최장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화물을 발송할 수 없다.  (7) <신고표>가 심사를 통과한 후 기(旣) 비안(備案) 상품을 변경할 수 없다.  (8) 세관은 기업이 <신고표>를 제출한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6.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세관은 기업이 제출한 <신고표>를 접수하지 아니하며 불접수 이유를 기업에게 고지한다.  (1)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세관으로부터 기한부 시정을 명받아 시정기에 있을 경우;  (2) 밀수•규정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세관이 입건 및 조사 중에 있으며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세관의 동의를 득하였고 보증금을 수취한 기업의 경우는 예외);  (3) 규정된 요구에 따라 통관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화물을 발송•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기업의 전자대장이 세관에 의해 수출입 일시중단 조치를 당한 경우;  (5) 신용불량기업에 속하는 경우.  반입기업의 비안(備案) 절차가 끝난 후 상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세관은 <신고표>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에 기업은 화물을 발송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 단, <신고표>상의 화물이 실제로 발송•수취된 경우에는 통관 수속을 허용한다.  7. 기업은 유통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한 후 <신고표>에 따라 실제로 화물을 발송•수취하여야 한다. 기업은 화물 발송•수취 차수별로 세관에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반출기업은 <신고표>에 따라 반출지 관할 세관에 구역 간 유통 반출 통과서류를 신고하여야 하며 반출지 세관이 통과를 허가한 후 반출지 관할 세관이 화물 발송 정보를 등기한다. 통과허가 서류가 없을 경우 반출기업이 스스로 화물 발송 정보를 등기한다.  (2) 반입기업은 <신고표>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관에 구역 간 유통 반입 통과서류를 신고하여야 하며 반입지 세관이 통과를 허가한 후 반입지 관할 세관이 화물 수취 정보를 등기한다. 통과허가 서류가 없을 경우 반입기업이 스스로 화물 수취 정보를 등기한다.  8. 보세운송(轉關運輸)의 방식으로 구역 간 유통 화물을 실제로 발송•수취하는 경우 보세운송(轉關運輸)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감독관리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세관의 봉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9. 반출기업•반입기업은 각 차수 화물의 실제 발송•수취일로부터 30일 내에 <해관총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통관서류 작성 규범> 개정에 관한 공고>(총서공고[2016]20호), <해관총서의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관리 관련 사항 공표에 관한 공고>(총서공고[2010]22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자의 관할 세관에서 집중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집중신고 수속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반입기업은 유통거래 수입 신고일로부터 2일(근무일 기준) 내에 신고 상황을 반출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기업은 실제로 화물을 발송•수취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유통 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업은 <신고표>에 따라 각 차수별로 또는 여러 차수를 합병하여 관할 세관에서 신고 수속을 이행한다.  (2) 기업은 해당 수(출)입 비안(備案) 리스트(보세 심사확인 리스트(保稅核注淸單)을 사용하는 경우 수(출)입 비안(備案) 리스트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하 '<비안(備案) 리스트>'로 약칭.) 작성 시 세관의 규정에 따라 유통되는 보세화물의 감독관리 방식, 운송 방식, 품명, 상품코드, 규격, 물량, 가격 등 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부의 반입 비안(備案) 리스트는 1부의 반출 비안(備案) 리스트와 대응되어야 하며 반입 비안(備案) 리스트 및 반출 비안(備案) 리스트의 신고번호, 상품코드, 가격, 물량(또는 환산 물량)이 일치하여야 한다.  반출 비안(備案) 리스트의 '관련 리스트 번호' 란에는 대응되는 반입 비안(備案) 리스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번호는 'K'로 기재하고 반입 비안(備案) 리스트 및 반출 비안(備案) 리스트의 첨부서류 번호 란에는 대응되는 신고표 번호를 기재한다.  (3) 기업은 각 차수별로 또는 여러 차수를 합병하여 관할 세무기관에서 신고 수속 이행 시 유통거래 양 당사자가 실제로 발송•수취한 물량에 근거하여 신고 물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실제로 수취한 물량과 실제로 발송한 물량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유통거래 양 당사자는 동일한 물량으로 신고한다.  실제로 수취한 물량이 실제로 발송한 물량보다 적은 경우 유통거래 양 당사자는 실제로 수취한 물량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실제로 수취한 물량과 신고 물량의 차이 부분은 반출기업이 반출지 관할 세무기관에서 세금 추가납부 수속을 이행한다. 허가증 관리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유효한 수입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제로 수취한 물량이 실제로 발송한 물량보다 많은 경우 유통거래 양 당사자는 실제로 발송한 물량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실제로 수취한 물량과 신고 물량의 차이 부분은 반입기업이 반입지 세관에 반입 비안(備案) 리스트를 신고하고 화물 반입 신고 수속을 처리한다.  (4) 기업의 불성실 신고 등 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한 구역 간 유통 화물은 세관의 처리 절차를 거친 후 신고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11. 반출기업•반입기업은 각 차수 화물의 실제 발송•수취일로부터 30일 내에 각자의 관할 세관에서 반입 신고를 먼저 하고 반출 신고를 하는 순서에 따라 집중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반출 신고와 반입 신고의 데이터는 일치하여야 한다. 집중신고 수속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반입기업은 유통거래 수입 신고일로부터 2일(근무일 기준) 내에 신고 상황을 반출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품질 문제 등 사유로 인한 반품•교체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기업•반출기업은 각각 그 관할 세관에서 반품•교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세관 보세화물 구역 간 유통 신고표.doc](http://www.customs.gov.cn/Portals/0/hgzs_zfs/%E6%B5%B7%E5%85%B3%E4%BF%9D%E7%A8%8E%E8%B4%A7%E7%89%A9%E5%8C%BA%E9%97%B4%E6%B5%81%E8%BD%AC%E7%94%B3%E6%8A%A5%E8%A1%A8.doc)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2016년 12월 30일 |  | **关于海关特殊监管区域和保税监管场所保税货物流转管理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6年第86号  为深入推进海关特殊监管区域、保税监管场所区域通关一体化改革，全面促进保税货物流转管理手续简化、成本降低和效率提升，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现将海关特殊监管区域和保税监管场所保税货物流转管理有关事宜公告如下：  一、企业开展海关特殊监管区域间、海关特殊监管区域与保税物流中心（B型）间、以及保税物流中心（B型）间的保税货物流转（以下简称“区间流转”）业务按照本公告要求办理。  二、企业办理区间流转业务可以采用“分批送货、集中申报”的方式办理流转手续；区间流转货物可由企业自行运输，参照转关运输方式办理区间流转业务的按相关规定办理。  三、企业开展区间流转业务应当按照海关规定，建立保税货物电子底账，并在规定的时限内，通过海关保税货物流转管理系统，向海关如实报送流转备案、收发货、申报等信息。  四、企业开展区间流转业务，应当向主管海关提交《海关保税货物区间流转申报表》（以下简称《申报表》，见附件），并按照以下流程办理流转备案手续。  （一）转入企业填报《申报表》的转入信息并向转入地主管海关申报，转入地主管海关进行审核。  （二）转入地主管海关审核通过后，转出企业填报《申报表》相应的转出信息并向转出地主管海关申报，转出地主管海关进行审核。  （三）《申报表》从转出地主管海关审核通过之日起生效。企业应当按照经海关审核后的申报表进行实际收发货，办理申报手续。  五、区间流转备案应符合以下要求：  （一）一份《申报表》对应转出企业一本电子账册和转入企业一本电子账册。  （二）《申报表》中保税流转货物品名、商品编号和计量单位等应与企业电子账册对应内容账册一致。  （三）区间流转对应商品的申报计量单位和申报数量应当一致，申报计量单位不一致的法定数量应当一致。  （四）流转双方的商品编码（商品编号前8位）应当一致。流转双方商品编码不一致的，应按转入地主管海关依据商品归类的有关规定认定的商品编码办理流转手续。  （五）当《申报表》的转入方表体为空时，不进行商品项比对。  （六）《申报表》有效期一般为半年，最长不超过1年，逾期不能发货。  （七）《申报表》审核通过后已备案商品不能变更。  （八）海关在收到企业《申报表》后5个工作日内完成审核。  六、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企业提交的《申报表》海关不予受理，并应将相关理由告知企业：  （一）不符合海关监管要求，被海关责令限期整改，在整改期内的；  （二）涉嫌走私、违规已被海关立案调查，尚未结案的（经海关同意，并已收取担保金的涉案企业除外）；  （三）未按规定要求报关或者收发货的；  （四）企业电子账册被海关暂停进出口的；  （五）属于失信企业的。  转入转出企业备案后如有上述情事，海关可对《申报表》进行暂停处理，在暂停期间企业不能进行收发货，但《申报表》项下已实际收发货的，允许办理报关手续。  七、企业办理流转备案手续后，应按照《申报表》进行实际收发货。企业的每批次收发货，应向海关如实申报。  （一）转出企业按照《申报表》向转出地主管海关申报区间流转出区核放单，由转出地海关实行卡口核放确认后，转出地主管海关登记发货信息。无核放单的，由转出企业自行登记发货信息。  （二）转入企业按照《申报表》向转入地主管海关申报对应的区间流转入区核放单，由转入地海关实行卡口核放确认后，转入地主管海关登记收货信息。无核放单的，由转入企业自行登记收货信息。  八、区间流转货物参照转关运输方式实际收发货的，应按转关运输有关规定使用海关监管车辆运输，施加海关封志。  九、转出、转入企业每批实际发货、收货后，应当在每批实际发货、收货之日起30日内，按照《海关总署关于修订〈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报关单填制规范〉的公告 》（总署公告〔2016〕20号）、《海关总署关于公布海关特殊监管区域有关管理事宜的公告》（总署公告〔2010〕22号）的有关规定，在各自主管海关办结集中申报手续。集中申报手续不得跨年度办理。  转入企业应在流转进口报关之日起2个工作日内将申报情况通知转出企业。  十、企业实际收发货后，应当按照以下规定办理流转申报手续：  （一）企业按照《申报表》逐批或者多批次合并向主管海关办理申报手续。  （二）企业填制相应的进（出）境备案清单（使用保税核注清单的，企业可不填制进（出）境备案清单，以下简称《备案清单》）时，应当按照海关规定如实、准确地向海关申报流转保税货物的监管方式、运输方式、品名、商品编号、规格、数量、价格等项目。  一份转入备案清单对应一份转出备案清单，转入、转出备案清单之间对应的申报序号、商品编号、价格、数量（或折算后数量）应当一致。  转出备案清单中“关联清单编号”栏应填写所对应的转入备案清单号。  随附单证代码填写“K”，转入、转出备案清单随附单证的单证编号栏内填写对应申报表编号。  （三）企业逐批或者多批次合并向主管海关办理申报手续时，应根据流转双方实际收发货数量确定申报数量。  实际收货数量与实际发货数量相同的，流转双方按相同数量申报；  实际收货数量少于实际发货数量的，流转双方按实际收货数量进行申报，实际发货数量与申报数量差异部分由转出企业向转出地主管海关办理补税手续，如属许可证件管理商品，还应向海关出具有效的进口许可证件；  实际收货数量大于实际发货数量的，流转双方按实际发货数量进行申报，实际收货数量与申报数量差异部分由转入企业向转入地海关申报入区备案清单，办理货物入区申报手续。  （四）企业发生申报不实等违规行为的区间流转货物，经海关处理后可以办理申报手续。  十一、转出、转入企业每批实际发货、收货后，应当在每批实际发货、收货之日起30日内在各自主管海关按照先报进、后报出的顺序办结集中申报手续，转出与转入申报数据应对碰一致。集中申报手续不得跨年度办理。  转入企业应在流转进口报关之日起2个工作日内将申报情况通知转出企业。  十二、因质量不符等原因发生退货、退换的，转入企业、转出企业分别在其主管海关按退货、退换的有关规定办理相关手续。  本公告自公布之日起执行。  特此公告。  附件：[海关保税货物区间流转申报表.doc](http://www.customs.gov.cn/Portals/0/hgzs_zfs/%E6%B5%B7%E5%85%B3%E4%BF%9D%E7%A8%8E%E8%B4%A7%E7%89%A9%E5%8C%BA%E9%97%B4%E6%B5%81%E8%BD%AC%E7%94%B3%E6%8A%A5%E8%A1%A8.doc)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2016年12月30日 |